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월 27일(금) 석간부터 취급하여
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 2월
27일(금) 06:00 이후부터 취급 가능

제 목 : 외화대출 용도제한 추가 완화

- 한국은행과 정부는 선물환포지선제도의 합리적 조정,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부리,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 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
- 동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2026.2.27일(금)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운전자금융 외화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*를 추가 완화**

*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실수요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음

** 한국은행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융 외화대출을 기 허용(2025.2.28일)한 바 있음

문의처 : 한국은행 국제총괄팀 팀장 김민규(02-759-5737), 과장 배석진(5752)

공보관 : Tel. (02) 759-4015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I. 완화 배경

- 한국은행과 정부는 선물환포지션제도의 합리적 조정,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부리,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 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

동 노력의 일환으로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*의 추가 완화**를 실시

*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실수요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음

** 한국은행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기 허용(2025.2.28일)한 바 있음

II. 조치 내용

-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운전자금융* 외화대출을 허용

*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에 따라 각 외국환은행등의 장이 운전자금으로 인정한 자금으로서 시설자금과 구분되어 관계 증빙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자금으로 통상 시설자금 이외 목적의 대출을 의미

○ 수출기업 정의 :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은 제외

○ 대출한도 :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을 한도로 대출 가능

○ 시행일 : 2026. 2. 27일(금)

⇒ 수출기업은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기 허용된 국내 시설자금 용도 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도 가능

Ⅲ. 기대 효과

- 금변 조치로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외환수급의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 - 기업은 원화·외화 대출 중 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며, 은행은 수익원 다각화 등 혜택이 예상
 -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에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/달러 환율 상승 압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